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사회통합전형 관련 Q&A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1

사회통합전형 개요

Q1

사회통합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나요?

A1

○ 사회통합전형은 영재교육대상자 모집정원의 **20%이내**에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유형	대상자	지원 자격
기 회 균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 수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사 회 다 양 성 전 형 (가구원소득상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군인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Q2

사회통합전형 지원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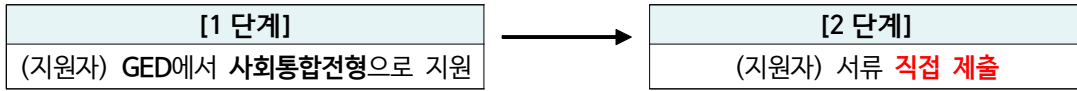
A2

- 사회통합전형 지원 시 아래 표와 같이 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①~③)]+[기획균등전형 추가 서류] 혹은 ②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①~③)]+[사회다양성 전형 필수요건 증빙 서류(④~⑦)]+지원 유형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서식] 1, 2, 3 및 상세내용은 2027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 참고

구분	대상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필수) ①~③		① (지원자 본인이 포함됨) 주민등록등본 ② (발급기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단, 다음 지원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발급기준) '부' 또는 '모' 기준 - 한부모가족: (발급기준) '자녀(지원자)' 기준 ③ [서식1]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신청서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바로가기 지원자 및 학교 작성
기 회 균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정부24 ① 수급자증명서 [☞] 바로가기 ②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바로가기
	법정 차상 위 계층 또는 그 자녀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바로가기 주민센터, 정부24 [☞] 바로가기 복지로 [☞] 바로가기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택1) 교육지원 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확인원	학교 [서식3] (교육비지원대상자확인서) 정부24 [☞]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학교, 정부24 [☞]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자녀	교육비지원 대상자 확인서	학교 [서식3] (교육비지원대상자확인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서식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해당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바로가기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기관 학교
	지역건강보험가입자 ①~⑥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년 포함)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바로가기
	직장건강보험 및 혼합(지역+직장) 가입자 ①~⑦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년 포함)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⑦-1 (주택 미소유 시) 전국단위, 재산세(주택)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자치단체에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증명서 1부 ⑦-2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 된 경우) 15~17쪽의 참고3-1, 3-2, 3-3, 참고4 확인 후 서류 각 1부씩 총 3부	구청(세무원부서), 주민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이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해당서류 발급기관
사 회 다 양 성 전 형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	
	소년·소녀 가정/조손가족의 자녀	사실 관계 확인서(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사 확인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공무원,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자녀 가족(3자녀 이상) 자녀	추가서류 없음	
	한부모가족 자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서류 발급기관
	환경미화원의 자녀	재직증명서	
	군인 자녀(중령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경감이하)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소방공무원 자녀(소방경이하)		

Q3 사회통합전형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 지원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영재교육원에 지원신청서와 확인(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단, (기회균등전형 유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로부터 학교장 추천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2 유형에 따른 지원자격 및 산정 방법

기회균등전형

Q4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이며, 법정차상위계층입니다. 이런 경우 두 개의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A4 ○ 기회균등전형에는 사회다양성전형과 달리 순위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내용 중 한 개 사항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Q5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A5 ○ 지원 학생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대상자* 제외)인 경우에 해당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는 소속 학교에서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아 확인서 제출 가능

○ 관할 보훈지청에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의 범위

■ 학생 '본인 또는 부(또는 모)'가 보훈대상자로서 **아래 증명서류(=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보훈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제3호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 본인 또는 부(또는 모)가 확인대상자로서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며, 학생 본인이 확인대상자이거나 부(또는 모)가 확인대상자로서 확인원 발급이 가능하고 확인대상자와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자녀 또한 해당 지원 자격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예시) 1. 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로서 지원 학생의 **부가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2. 외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로 전사하여 **모가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할아버지께서 참전유공자여도, 부(또는 모)는 국가보훈대상자 **아닌 경우(또는 확인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지원 불가**
 4. 할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여도, 부(또는 모)는 국가보훈대상자 **아닌 경우(또는 확인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지원 불가**

Q6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보훈대상자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원을 발급 받았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되나요?)

A6

- 아래 (예시) 확인서의 '확인대상자'란에 '지원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나온다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4서식] <개정 2023. 6. 5.>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발급번호

독립 유 공 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훈격
	성명	생년월일	등록일자
선 순 위 자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확 인 대 상 자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용 도 및 제 출 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용도	제출처	

위 확인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보훈지청 장 적인

유의사항

※ 이 확인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Q7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 되나요?

A7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가정에서 갑작스런 사유(부모의 사망, 사업의 파산, 실직 등)로 기준중위소득 50~60%이하 수준으로 급격히 어려워진 가정의 자녀 중(전형 지원 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학교장이 판단·추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학교에서는 실직급여수급증서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 위탁 또는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학생도 이 전형에 포함됩니다.

사회다양성전형

Q8

사회다양성전형 필수요건인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8

○ 지원자가 해당하는 유형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월액(건강)포함 금액]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지역+직장)	
2인	181,659	243,833	247,763	982,560
3인	264,935	309,777	318,043	1,428,000
4인	338,641	374,300	390,974	1,864,080
5인	435,046	457,613	490,306	2,271,840
6인	525,833	535,512	584,741	2,655,600
7인	579,249	584,741	634,423	3,024,000
8인	628,429	634,423	712,921	3,392,160
9인	697,282	712,921	838,330	3,760,560
10인	697,282	712,921	838,330	4,128,960

*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분류	내용
지역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 내역 확인 불필요 “지역건강보험료 전환자 중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유의사항2 확인)
직장가입자 혼합(지역+직장)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 및 2026년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액 두 조건 모두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유의사항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관련

- (개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의미
※ 단, 직장 및 혼합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 ‘소득월액(건강)’을 포함한 ‘고지금액’을 의미
- (제외사항) 장기요양보험료 고지금액 및 연말정산금액(분할) 납부청구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에서 제외함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을 분할 납부한 경우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제출해야 함

(발급방법)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 : 재직 중인 사업장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공단 전산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 팩스번호로만 전송 가능
- 부·모의 ‘최근 1년 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 기간 포함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변동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한 뒤,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금액을 합산

※ 유의사항 2.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관련

- (발급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및 구청(세무민원부서) 직접 방문 발급 ※ 온라인 발급 불가 ※ 부와 모 각각 제출
- (개념) 재산세(주택) 과세금액이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주택 과세 합산금액’을 의미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에 대한 과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
- (사례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1부 제출): 전국 자치단체 재산세(주택)기준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전국단위 무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사례2)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각 1부씩 총 3부 제출): 재산세(주택) 부과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부과되지 않은 내역(서울 내 부과되지 않은 모든 자치구 포함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서울 제외 전국 16개 시·도 기준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 사실 없음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Q9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일 경우 가구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9

- 가구원 수 산정은 **부모와 자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소득 및 재산도 제외됩니다.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됨
(※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에 의하며, 피부양자수에 따라 가산되지 않음)

Q9-1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삼촌 가정과 같이 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양자가 (외)할아버지이며, 다른 가족은 전부 피부양자입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외)할아버지께서 대부분을, 아버지, 삼촌께서 일부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9-1

- (외)할아버지께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다른 가족이 전부 피부양자일 경우 할아버지와 다른 가족을 포함하여 가구원 수를 산정하며, 재산세 부과 내역은 할아버지를 포함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각각의 재산세 부과액 중 주택분 내역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10

부(또는 모)가 지방에서 근무하여 주민등록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10

- 주민등록상의 거주 가구원 수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구성원 중 부, 모, 자녀만으로 가구원 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Q11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계시지만 실제로 할머니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A11

- 주민자치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회균등전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따라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모의 장기 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할머니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12 재산세 과세금액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A12 ○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과세에서 ‘재산세(주택)’으로 되어 있는 과세 내역만 합산(7, 9월 과세금액)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주택) 이외 재산세 과세 시 포함 되어 있는 토지, 상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는 인터넷 정부24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직접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또는 구청(세무민원부서)를 방문하여 발급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불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과세가 있는 지역 증명서와 과세되지 않은 지역 증명서를 모두 발급해야 합니다. (5쪽 유의사항2. 재산세(주택)과세금액 관련 및 참고3-1~3-3 및 참고4를 확인하여 구비서류 제출, 15~17쪽)

Q13 (전형일 이전 6개월 중 고지금액이 일부 달만 있는 경우)
부(또는 모)가 전형일 이전 6개월 중 일부 또는 전 기간 실직한 경우(소득이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등)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13 ○ 우선, 건강보험료 자격 득실확인서를 통해 먼저 가격 변동을 확인합니다.
○ 가입자 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부와 모의 6개월 평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예시) 6개월 중 2개월분만 고지 금액이 있고, 나머지 기간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것이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의 계산: $\text{고지된 2개월 건강보험료 합산} \div 6\text{개월}$

Q14 부(또는 모)가 전형일 이전 6개월 중 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14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시 휴직 전 6개월간 실제 고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합니다.
※ 전형일 이전 6개월 중 중간에 휴직한 경우: 중간 휴직 이후 일부 고지된 달이 있는 경우 해당 개월 수와 중간 휴직 전 고지된 개월 수를 합하여 6개월 분으로 산정

Q15 부모님의 소득 이외에 미혼으로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남매(이하 형제로 통칭)도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와 보험료 및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15 ○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전형을 시행함으로 형제의 소득 및 재산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미혼인 형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구원 수로 산정됩니다.
※ 미혼인 형제가 성인인 경우 형제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미혼임을 확인

Q16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으로 미혼인 형제가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구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16 ○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인 형제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를 산정합니다.

Q17 기혼인 형제가 다른 세대로 구성한 경우 다자녀가족 전형으로 지원 가능하나요?

A17 ○ 다자녀가족 전형은 형제의 결혼 여부와 관련 없이 3자녀 이상이면 다자녀가족 자녀 전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가 결혼하여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가구원 수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Q18 부모, 기혼인 형제 가족, 미혼인 형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18 ○ 가구원 수 산정은 부모와 자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 모, 형제, 학생 본인만 가구원 수로 산정됩니다. 다만, 기혼자인 형제의 경우 최소 원서접수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Q19 입양을 통한 다자녀의 경우에도 다자녀가족 자녀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A19 ○ 네, 가능합니다.

Q20 한부모가족과 다른 한부모가족과의 결합에 따른 다자녀가족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자녀가족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A20 ○ 네, 가능합니다.
○ 단, 자녀를 양부(또는 양모)가 입양하여 가족 구성원으로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자녀 중 동거인으로 있는 경우 다자녀 대상 아님)
○ 이 경우 다자녀가족 전형으로 결합된 가정의 부모의 소득과 재산 합산 금액으로 산정하여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예: 양부+친모 소득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 친부의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는 합산에서 제외)

Q21 한부모가족인 경우 가구원 수 산정,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합산해야 하나요?

- A21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 전 친부, 친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으로 가구원 수를 산정합니다.
- (예: 부, 모, 형제 명으로 구성된 4인가구가 이혼으로 인하여 부(또는 모)와 분리되어 살고 있는 경우 원 가족인 부, 모, 형제 2명 4인가구로 산정)
- 사별 또는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친부 또는 친모의 소득 및 재산 내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친부 및 친모와 합산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과세 금액 모두 [표]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과세금액 기준표 금액 (Q8참조) 이하여야 합니다.

Q22 한부모가족으로 친부(또는 친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22 ○ 한부모가족의 경우라도 친부 및 친모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정폭력 등에 따른 보호조치 등의 처분으로 친부(또는 친모)와 연락이 곤란한 경우 보호조치 등 이혼 관련 서류(예시: 판결문)를 첨부하여 현재 가족구성원인 친모(또는 친부)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수는 부를 제외한 모와 자녀만으로 산정됩니다.
- 친부(또는 친모)가 행방 불명인 경우에는 행방 불명 관련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Q23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23 ○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을 말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예시)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

※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Q24 아버지가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인인 어머니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A24 ○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재한외국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25 우리나라 국적인 부(또는 모)와 외국인 모(또는 부)가 우리나라로 귀화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으나, 현재 이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다문화가족 전형으로 지원 가능할까요?

A25 ○ 다문화 가정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Q26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모(또는 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문화가족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A26 ○ 부 또는 모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27 부(또는 모)는 외국 국적이며, 모(또는 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학생이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외국 국적인 경우 다문화가족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A27 ○ 네 가능합니다. 단, 우리나라 초·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초·중학교 재학생과 동등 학력 인정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Q28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은 어떤 경우인가요?

A2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목 차

참고 1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 수 적용, 증빙서류 발급 방법	12
참고 2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양식)	14
참고 3-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된 지방세(주택) 양식	15
참고 3-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서울) ..	16
참고 3-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전국) ..	17
참고 4	사회다양성전형 재산세(주택)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방법	17
참고 5	복지로 사이트 서류 발급 방법	18
참고 6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19
참고 7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및 제출 서류	20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단, 원수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하여 합산

③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제외)
 -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 기타 건강보험료 산정 및 사례는 '사회통합전형 Q&A' 참고

④ 제출 자료 발급 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을 위한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The screenshot shows the '보험료 납부확인서' (Insurance Payment Confirmation Certificate) page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ebsite. The page includ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민원서비스', '건강보험', '정책·제도', '정보공개', '국민소득·참여', and '공단소개'. The main content area has a title '보험료 납부확인서' and a brief description: '기타징수금 납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Below this, there is a '개요' (Overview) section with a table listing service details: 대상 (대상: 전국민), 유형 (유형: 증명서 발급), and 신청방법 (신청방법: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유선(1577-1000), 지사방문). A '자세히 알아보기' (Learn More) section follows, stating the purpose: '납부하신 건강보험·연금보험 보험료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On the right, there is a sidebar with a '이 페이지의 구성' (Page Structure) section listing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부가정보', and '정보 변경 내역'.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buttons for '목록으로' (Back to List) and '발급하기' (Apply).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바로가기](#), [자격득실확인서](#) [바로가기](#)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ebsite. The left screenshot displays the '자격확인서' (Qualification Confirmation Certificate) page. It featu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민원서비스', '건강보험', '정책·제도', '정보공개', '국민소득·참여', and '공단소개'. The main content area has a title '자격확인서' and a brief description: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Below this, there is a '개요' (Overview) section with a table listing service details: 대상 (대상: 전국민), 유형 (유형: 증명서 발급), and 신청방법 (신청방법: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유선(1577-1000), 지사방문). A '자세히 알아보기' (Learn More) section follows, stating the purpose: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On the right, there is a sidebar with a '이 페이지의 구성' (Page Structure) section listing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부가정보', and '정보 변경 내역'.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buttons for '목록으로' (Back to List) and '발급하기' (Apply).

The right screenshot displays the '자격득실확인서' (Qualification Acquisition Confirmation Certificate) page. It featu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민원서비스', '건강보험', '정책·제도', '정보공개', '국민소득·참여', and '공단소개'. The main content area has a title '자격득실확인서' and a brief description: '본인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Below this, there is a '개요' (Overview) section with a table listing service details: 대상 (대상: 전국민), 유형 (유형: 증명서 발급), and 신청방법 (신청방법: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유선(1577-1000), 지사방문). A '자세히 알아보기' (Learn More) section follows, stating the purpose: '본인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On the right, there is a sidebar with a '이 페이지의 구성' (Page Structure) section listing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부가정보', and '정보 변경 내역'.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buttons for '목록으로' (Back to List) and '발급하기' (Apply).

참고 2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양식)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명칭	①			납부자번호	⑤			
2025년 01월~2025년 12월 납부내역								
(단위:원)								
월별	고지금액				납부금액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월액(건강)	소득월액(요양)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월액(건강)	소득월액(요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②		④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정산	③		③					
합계								
납부총액				용도구분		납부확인용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① 사업장 명칭: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 명칭이 기재되어 있음(※ 지역가입자: 사업자 명칭 없음)**

②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금액 산출**

* 합계금액: 고지금액 합계시, 고지되지 않은 달도 최근 6개월에 포함됨

예) 6개월 중 3개월만 고지금액이 있는 경우: 3개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 6개월

③ **연말정산**: 전년도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가감분(※ **산정에서 제외**)

※ **연말정산 금액을 5~10회 분할 납부한 경우**: 재직하는 사업장의 업무담당자 신청으로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 신청하여 발급 가능(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여야만 발급 가능) - 유선 발급 시 공단 전산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팩스번호로만 전송 가능

④ **소득월액(건강)**: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금액까지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납부번호 확인. 납부번호가 동일하면 중복하지 않고 세대주 금액으로만 산정

※ 참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는 납부확인서 발급 자체가 되지 않으며, ‘자격득실확인서’로 피부양자임을 확인

참고 3-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된 지방세(주택) 양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 Registra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재산세 주택 ①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소계					
재산세 주택 ②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소계					

수입증지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FEE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성명(법인명):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발 신 명 의(직인)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_____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 재산세 주택①, ② 금액 합산 (기타 과세 내역제외)

※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세무민원부서) 방문하여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 지방세 부과된 지역(참고3-1) 및 부과되지 않은 지역(참고 3-2, 3-3) 각각 발급하여야 함

참고 3-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서울]
(예) 서울 내 과세된 자치구 외 나머지 모든 자치구에 재산세(주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

Page : 1/1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Foreign) Registrat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제증명을 위한 서류제출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예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발급(서울시)

서울 강남구, 서울 강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서울 중랑구 ※ 재산세(주택분)이 과세된 자치구 외 서울 내 모든 자치구 표기

[과세연도: 2024~2025] 재산세(주택)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Name
(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
(Business Office)

년 월 일(YYYY/MM/DD)

서울특별시

구청장 정장인

승인일: 2024.06.15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Jongno-gu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 참고 3-2: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과세된 서울 내 자치구 외 모든 자치구에 대한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을 증빙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서울시 기준 자치단체 발급) 까지 3-1~3-3 각 1부씩 총 3부 제출 필수

참고 3-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전국]
(예: 서울 외 16개 시도 지역에 재산세(주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Page :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 Registration No.

상호 Company Nam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과세년도 : 2024~2025년]
재산세(주택)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서울특별시 구청장 [장장인]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Jongno-gu
본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주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 참고3-1, 3-2, 3-3 서류를 종합하여 '과세된 지역' 및 '과세되지 않은 지역'을 합쳐 17개 시·도가 모두 있어야 함

참고 4 사회다양성전형 재산세(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방법

구분	발급 서류
주택 미소유 (제출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1부 : '전국 자치단체'에 재산세(주택)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주택 소유하여 재산세 과세된 경우 (제출서류: 각 1부씩 총 3부) 사례: 서울 A자치구에 주택 소유	참고3-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된 지방세(주택)양식 1부 : 서울시 내 재산세(주택) 기준으로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증빙예시: 서울 A구에 재산세(주택) 해당 세목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내역이 포함된 서류
	참고3-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양식 [서울] 1부 : (서울시 기준 자치단체 발급) 과세사실 있는 서울시 내 자치구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재산세(주택)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증빙예시: A구 이외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에 재산세(주택) 해당 세목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서류
	참고3-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양식 [전국] 1부 : (무관할, 전국단위 발급) 과세사실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에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재산세(주택)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증빙예시: 서울시 이외 다른 광역자치체(16개 시도) 재산세(주택) 해당 세목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서류 ★ 서울시 아닌 나머지 16개 시·도에 주택을 소유하여 지방세 재산세(주택)분이 과세된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각 1부씩 총 3부 제출
발급처(공통)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세무민원부서) ※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 온라인 발급 불가

참고 5 복지로 누리집 서류 발급 방법

복지로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위기알림

복지신고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화면 따라하기

복지서비스 신청서식

민원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가족정보 제공 동의

복지급여제외변경 등의 작권 신청 요청 동의

증빙 서류 제출 화면 따라하기

증명서발급·진위확인

증명서발급 증명서 진위 확인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

사회서비스 신청

시설 이용 신청

★ 자주 찾는 서비스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위기알림

복지신고

내 손안의 복지/ 복지로 모바일 앱

바로가기

모든 서비스 이용하기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 또는 금융기관 등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기

간편인증 이용 안내

금융 인증서

금융 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발급 및 저장되어 관리 되는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공동 인증서

별도로 은행같은 금융기관이나 공식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서명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기

복지로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위기알림

복지신고

복지지갑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증명서발급·진위확인

증명서발급

증명서발급

증명서 발급 안내

- 증명서 발급은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포함하여 6종을 온라인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종은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외부 사이트로 링크)
- 신청서 작성 후 '복지지갑>증명서 발급내역'에서 출력, 정부전자문서자갑 전송, 한맥스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 수량은 1부만 가능하며, 당일 발급 신청한 증명서는 당일(23시 59분)까지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계층확인' 자격보유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보유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
- 자활근로는 자활근로자 확인서 메뉴에서 발급 가능

발급 서비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신청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신청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신청

장애인연금, 장애아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

장애인 증명서

발급신청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

한부모가족 증명서

바로가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제출명

바로가기

참고 6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h·well
국민건강보험
만원서비스

서비스찾기

건강보험 자격	서비스 유형	분야		대상 유형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사업장	☐ 신고/신청 ☐ 발급 ☐ 조회 ☐ 바로가기	☐ 자격 ☐ 납부 ☐ 현금급여 ☐ 의료비지원	☐ 보험료 ☐ 현금금 ☐ 현금급여 ☐ 본인부담 완화	☐ 임출산 ☐ 장애인 ☐ 아동/청소년 ☐ 만 65세 이상

키워드

전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Q 검색

선택된 필터 (0/1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검색 결과 1개

목록 표시 개수 12개 ▼ 정렬기준 최신순 조회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발급하기

참고 7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및 제출 서류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공 통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비 고
	① (지원자 본인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② (발급기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단, 다음 지원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발급기준) '부' 또는 '모' 기준 - 한부모가족: (발급기준) '자녀(지원자)' 기준	구청, 주민센터, 정부24(누리집)	○ 정부24(누리집) ☞ 바로가기
	③ [서식1]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신청서	지원자	○ [붙임목차 서식1] (p.23)

□ 기회균등전형(공통서류①~③ +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

기 회 균 등 전 형				
+ 아래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추가 제출				
지 원 유 형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비 고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구청, 주민센터, 학교, 정부24(누리집)	○ 정부24(누리집) ① 수급자 증명서 ☞ 바로가기 ②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 바로가기
2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주민센터, 복지로(누리집)	○ 복지로(누리집) ☞ 바로가기 (인증서 로그인 필요) ※ 복지로 누리집 서류 발급 방법 (참고5)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누리집) ☞ 바로가기

기 회 균 등 전 형

녀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서식) (p18. 참고 5.)	공단(누리집)	(인증서 로그인 필요)
3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누리집), 복지로(누리집)	○ 정부24(누리집) 바로가기 ※ 본인 유형에 따른 서류 확인 필요 ○ 복지로(누리집) 바로가기 ※ 복지로 누리집 서류 발급 방법 (참고5)
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택1) 교육지원 대상자 외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교, 관할 보훈지청, 정부24(누리집) 관할 보훈지청, 정부24(누리집)	○ 학교 [붙임목차 서식3] (p25.) ○ 정부24 바로가기 ※ 본인 유형에 따른 서류 확인 필요
5	기준중위소득50%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학교	○ 정부24 바로가기
6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 대상자 확인서(확인서 발급 사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임을 확인) ■ 해당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출)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의 자녀로 교육비지원 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 후 추천(NEIS에서 확인 가능)	학교	○ 학교: 학교 행정실에 교육비 담당부서 문의 후 수기발급 요청(※학교장 직인 날인)
7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등 ○ [서식2]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누리집)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기관 학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학교추천위원회(p8. 구성 요건 및 역할) 심의 후 학교장 확인서[서식2] 발급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추천위원회 구성 필수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 [붙임목차 서식 2] (p.24)

□ **사회다양성전형**(공통서류 ①~③ + **사회다양성전형 필수요건 증빙서류 ④~⑥ 또는 ④~⑦ +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

사 회 다 양 성 전 형 [※ 필수요건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자녀]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 제출 서류 지역건강보험가입자 ①~⑦ 직장건강보험및혼합 (지역+직장)가입자 ①~⑧	지역건강 보험가입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년 이상 포함)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⑥ 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누리집)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인증서 로그인 필요)
	직장건강보험 및 혼합 (지역+직장) 가입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년 이상 포함)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⑥ 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⑦-1 주택 미소유 시: 전국단위 , 재산세(주택)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자치단체에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증명서 1부 제출 ⑦-2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 된 경우: 19쪽의 참고4 표와 17~19쪽의 참고3-1, 3-2, 3-3의 서식 확인 후 각 1부씩 총 3부 제출	주민센터, 구청(세무민원부서) (방문 발급만 가능, 온라인 발급 불가)	○ 참고3-1(17쪽), 참고3-2(18쪽), 참고3-3(19 쪽), 참고4(19쪽) ※ 지방세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위 해당 페이지 확인하여 서류 제출 ★ 서울시 아닌 나머지 16개 시도에 주택을 소유하여 지방세 재산세(주택)분이 과세된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각 1부씩 총 3부 제출 ★ (예시 서류 지참 시 서류 발급 용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세무민원부서) 방문 하여 서류 발급 시 17~19쪽 참고 서식 지참 권장

+ 아래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추가 제출

지 원 유 형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비 고
1 순 위	1	다문화가족 자녀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해당서류 발급기관	
	2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3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결과통지서 사본		
	4	소년·소녀 가장/	○ 사실 관계 확인서(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사 회 다 양 성 전 형 [※ 필수요건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자녀]

		조손가족의 자녀			
	5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부모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6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공무원,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7	다자녀 가족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없음		
2 순 위	1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당서류 발급기관	
	2	환경미화원의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3	군인 자녀 (중령 이하)	○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증빙 대상자가 원서접수 기간 동안 지원 대상 계급(예: 중령, 경감, 소방경 이하)자격을 충족해야 함		
	4	경찰(해양경찰) 자녀 (경감 이하)			
	5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경 이하)			

※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지원 자격 확인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원서접수 후 서류 심사과정에서 사회통합전형 지원자의 서류 미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됨

붙임 목 차

[서식1]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신청서	25
[서식2]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26
[서식3] 2025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 확인서	27

[서식1]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 원 신 청 서

학생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교	() 학교 ()학년 ()반		
지원 기관	()영재교육원 ()분야		
학부모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사회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우선	유형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가구원수 (인)
		2순위	유형 (), 가구원수 (인)
본인은 2026학년도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합격한 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학 생 _____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_____ (서명) ()영재교육원장 귀하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가구원 수 기재

※ 기회균등전형자는 선발 전형료 면제(사회다양성전형자는 전형료 납부해야 함)

[서식2]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 교 장 추 천 서

학생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교	() 학교 ()학년 ()반		
지원 기관	()영재교육원 ()분야		
전형 유형		지원 자격	
기회균등전형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추천 사유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의 경우에만 작성		
위 학생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따라 해당 지원 유형 및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선정하였음을 서약하며, 위 학생을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00 학 교 장 [직 인] ()영재교육원장 귀하			

2025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인서

요청일		2025.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생과의 관계		
대상 학생	성명		학년		생년월일		
교육비 지원 여부 (해당 칸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	☐	☐	☐	☐	☐	☐	
지원 기간	20__. 0. 0. ~ 20__. 0. 0.						
확인서 발급사유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사회통합전형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임을 확인) ⇐ 해당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OO 학 교 장 [직 인]							

학교장 직인이 없는 확인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본 확인서는 학생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만 발급합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도 발급 가능)

* 본 확인서는 발급사유에 맞게 활용하는 것만 유효하며, 발급사유 이외 목적의 증빙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